

청 원 원 문

[청원의 취지]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청원함. 특히,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군사규제로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인구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동 법안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동 법안에 담긴 군사규제 완화에 관한 규정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강력하게 청원함. 또한 설악권 지역에는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광역적인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청원의 이유 및 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역발전을 위해 원만히 처리되기를 청원

강원도 속초에서는 2023년 2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시민토론회”, 2023년 3월 19일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정책적 쟁점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바, 여기에 참가한 속초인제고성양양 설악권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동법안이 원만히 처리되기 를 희망하고 있음.

2. 동 법안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 건의) 등의 군사규제에 관한 규정의 원만한 처리 입법청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 속초시 장사·영랑·동명·금호동 일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규제로 인하여 32년째 건축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음. 또한 강원도 인제, 양양 등의 경우에도 군사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 따라 동 법안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의 군사규제에 관한 규정의 원만한 처리를 청원함.

3. 동 법안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에 2개 이상의 시군을 거치는 광역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적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입법 청원

설악권 지역에는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광역적인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광역시설의 공동활용 및 협의설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는 광역철도망이 신설되는 속초인제고성양양 설악권 지역뿐만 아니라 2개 시군에 걸치는 광역교통망, 광역산업단지, 광역상수도망,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광역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하는 지역에 필요한 광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